

2026년 제4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류, 총 25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7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13명
				(장애인전형)	1명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일반전형)	10명
				(장애인전형)	1명

※ 하나의 직류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류 중복 지원 불가)

※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 예정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선박 및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선박운항 및 기관관리(승선업무), 수산 관계 법령 집행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 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인사관리 규정, 균형인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 임용예정일(2026.10.12.) 기준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선박기관	해양수산 서기보	■ 5급 이상 해기사 면허(기관사) 소지자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 응시직류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6.9.1.)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6.10.12.) 기준으로 판단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에 휴직 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0.12.)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전형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세부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필기시험

-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전형은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시험유형) 영어시험은 객관식, 전공과목(2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 영어(80問, 객관식) ■ 해사법규, 해상안전론(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90분 전공 : 100분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 영어(70問, 객관식) ■ 선박일반, 선박기관(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 일반선박 7급 >

-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 선박기관 9급 >

- (선박일반)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해사개론
- (선박기관)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선박기관 실무 관련 전문지식 등

다. 면접시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및 우리부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인재상》

소통 배려	항상 국민과 소통하며 한 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무원
열정 능동	우리나라 해양수산 부문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다는 열정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
전문성 창의	해양수산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
청렴 책임	청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무원

- (평가방식) 집단토의 평가(7급만),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7급 > 집단토의 평가,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20분)
- 집단토의 :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 필기시험 합격인원, 응시순서를 고려하여 집단토의 '조' 배정 실시
 - 토의과제는 면접시험장에서 조원 전체가 동시에 검토
- 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 9급 >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20분)
- 5분 발표 : 과제검토(15분), 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6.(월) ~ 7.16.(목)	7.14.(화) ~ 7.16.(목)	7.27.(월)	8.8.(토)	8.27.(목)	9.1.(화) ~ 9.3.(목)	9.11.(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필기시험·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람·뉴스 → 채용 공모)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14.(화) ~ 7. 16.(목)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우) 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대변리)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10-1017
(우) 58746,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40-7924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

- 동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부산지역 필기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목포지역 필기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7급 7천원, 9급 5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해야만 접수처리 완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응시자격(면허)증 1부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필요시) 별지서식 제5호
	졸업증명서(학위증)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 일반선박(7급) 직류 지원자는 필수 제출
	장애인전형 응시자 증빙서류 1부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 1부	

※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해 당 직 류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선박기관(일반), 일반선박(일반)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높은 비율 가산점 1개만 적용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또는 3%	선박기관(일반), 일반선박(일반)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일반선박(장애), 선박기관(장애)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채용대상인 모든 직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일반선박(장애), 선박기관(장애)는 의사상자 가점 적용 불가

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한 과목이라도 40%미만(과락)인 경우 가산적용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해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 (1·2급은 5점, 3급은 3점)를 가산(한 과목이라도 40%미만(과락)인 경우 가산적용 불가)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2026. 8. 7.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 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6.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 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14. ~ '26. 10. 13.)

10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85)로 연락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기술서(일반선박 7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주요업무	○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 항만국통제(PSC) 점검,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심사, 선박톤수 측정 등 -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 해양사고접수, 관계인 조사, 심판청구, 불필요처분 관련 업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 등 관련규정·협약 및 항해, 기관 등 선박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운항, 해상교통안전 규칙 등 관련 전문지식 ○ 외국적선 점검, 국제협력 등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 해기사 면허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자격증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 요건 선정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5%, 3%)	

직무기술서(선박기관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주요업무	○ 선박 운항 및 기관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기관당직 업무 - 기관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연간 120~160일 승선, 선박별 상이 * (어업관리단)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 (지방해양수산청) - (항로표지과) 연간 100~120일 승선, 항차별 2~3일 승선 - (해양수산물환경과) 연간 180~200일 승선, 항차별 2~3시간 승선 *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7~20일 승선 ○ 수산 관계 법령 집행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내·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지식	
응시 자 격 요 건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5%, 3%)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 응시원서에 부착(우표 양식) 및 응시원서 뒤 첨부(A4 양식) * 7급 7천원,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면허·자격증 취득일, 유효기간 등 빠짐없이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응시자격(면허)증 1부 : 필수서류	○ 자격(면허)증 사본을 제출 * 응시요건 해당 면허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시험일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 ※ 필요시 <별지서식 제5호> 활용	○ 해기사 경력자는 해기사 면허증 및 승무경력증명서(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사본 제출(필요 시 경력증명서 요구 예정) ○ 기관 날인이 찍힌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기관(부서)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직무, 근무형태(주00시간)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자(인사/총무부서) 연락처도 하단에 기재 요망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에 휴직 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함
5. 학위증(졸업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 (일반선박 직류 지원자는 필수 제출)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6.10.12.)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6. 장애인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1부 : 해당자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을 제출

구 분	내 용
7.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사본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2026.8.7)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자필 기재 및 서명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자필 기재 및 서명
10.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군복무중인 응시자는 전역예정일이 나와있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알림 문서 등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 가능함을 증빙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공증 필수)
- ⇒ 직류별로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 제4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류	선박항해(일반)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표	
응시직류	선박항해(일반)	성명	
주민등록 번호		-	
2026년 월 일 해양수산부 장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필기시험 고사장 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해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류 : 시험은 각 직류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 직류를 정확하게 기재

※ 응시직류는 일반선박(일반), 일반선박(장애인), 선박기관(일반), 선박기관(장애인), 중 택1 하여 기재

※ 직류 통합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원서접수 시 응시기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임용예정기관 통보 예정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파일 붙임 출력 금지**

7. 정부수입인지 : 인지(7급 7천원, 9급 5천원)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응시표 뒤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자격증, 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경력증명서, 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 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기관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휴직시 휴직 사유)	주당 근무시간 (상근/비상근)	비고	
	부터	까지						
	(예시) '00.00.00	'00.00.0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주사	수산물품질관리	주 40시간 (상근)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담당업무 :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상근/비상근) 기재

○ 휴직기간: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발급자/확인자 : 발급 업무 담당자 및 발급자의 직속상급자 또는 부서장 등(발급 신청자x)

※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는 근무경력, 주당 근무시간 등이 확인 곤란 할 경우에 해당 서식을
사용하며,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봉투표지 양식 - 부산>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신이 지원한 접수처(지역)가 맞는지 확인 요망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직류(해당 직류 ○ 표시)
(일반선박 / 선박기관)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우) 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대변리)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TEL : 051-410-1017

[2026년 제4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원서 재중]

<봉투표지 양식 - 목포>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신이 지원한 접수처(지역)가 맞는지 확인 요망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직류(해당 직류 ○ 표시)
(일반선박 / 선박기관)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우) 58746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TEL : 061-240-7924

[2026년 제4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원서 재중]